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7. 13.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6月 10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6月 12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開會中) 第1次 委員會(1993年 7月 13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 가. 1993. 6. 10.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현재 우리 구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중인 속기사들의 신분이 기능직공무원 (지방사무보조원, 8등급 2명, 10등급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공무원화 함으로서 인력확보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다소나마 처우개선책을 강구함으로서 속기사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구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현원 4명중 3명은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신설되는 8등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나 1명은 속기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기준인 속기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별정직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한 실정인 바.
- 다. 이를 구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12230-367(93. 5. 26)로 시달된 시장지시에 의하면 동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 (② (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을 두어 1994. 12. 31까지는 현재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기간 안에 속기2급

자격증을 취득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별정직으로 전직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동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안을 예의 검토한후 처리함이 요망됩니다.

- ① 서울시 광역의회 및 22개구 의회 소속 속기사들의 자격요건을 통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지시대로 경과규정에 의거 94. 12. 31까지 자격미달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별정직으로 전직 할 수 있도록 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는 계속 기능직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② 자격기준에는 미달한다 하더라도 91. 5. 6. 이미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공로를 감안하여 동 개정 조례(안)중 별표1. 9급상당 자격기준에 "2. 한글속기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근무 경력 2년이상 인자"를 추가하여 별정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방안.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
----------	-----

제출년월일: 1993. 6. 10.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提案理由

구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구의회사무국 속기사(별정7급상당~9급상당)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함(별표1)

3. 參考事項

-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표1>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7. 구의회관련분야중 구의회전문위원란 다음에 속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속 기사	7급상당	회의록 작성 및 편집	1. 한글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자 2. 별정직 8급 상당으로 당해 분야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
	8급상당	회의록 작성 및 편집	1. 한글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 2. 한글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자 3. 별정직 9급 상당으로 당해 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자
	9급상당	회의록 작성 및 편집	1.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 구의회 관련분야					7. (현 행)				
직명(위) 및 업무 구 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용자격	비 고	직명(위) 및 업무 구 분	직 급	직 무 내 용	임용자격	비 고
구 의 회		(생 략)			구 의 회		(현 행)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 설>					속 기사	7 급 상 당	회의록 작성 및편집	1. 한글속기 1급자 격중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 력 4년이상인자 2. 별정직8급 상 당 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이 상인자	
<신 설>						8 급 상 당	회의록 작성 및편집	1. 한글속기 1급자 격중 소지자 2. 한글속기 2급자 격중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 력 2년이상인자 3. 별정직9급 상 당 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 상인자	
<신 설>						9 급 상 당	회의록 작성 및편집	1. 한글속기 2급이 상 자격중 소지 자	